

#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제도(시안)

## 1.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제도의 의의

-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에 민간의 활력과 자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
-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초고속가입자망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
- 기존의 통신사업자 선정절차와는 별도로 특정지역에 초고속망사업자를 승인하는 제도

## 2. 초고속망사업자 정의 : 자격 및 지위등(정보화촉진기본법 제 29조)

- 개념
  -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2조의 초고속정보통신망(실시간으로 동영상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통신망)을 구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

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

- 자격
  - 전기통신사업법 제 6조(제 6호 제외) 및 종합유선방송법 제 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유선방송법 제 6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한 자
- 지위
  - 초고속망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자허가와 종합유선방송법상의 전송망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봄
- 기타
  - 초고속망사업자로 승인받은 자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, 소유지분 제한, 상호접속, 요금인가, 중요통신설비의 설치승인등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 및 종합유선방송법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음

## 추진주체별 자격제한

구 분	제 한 내 용	관 련 법 규
성 격	-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	종합유선방송법 제 5조
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등	- 다음의 자가 대표자·이사·감사인 법인 ·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·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·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· 위의 자가 의결권의 5/100이상을 가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	종합유선방송법 제 5조
	-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는 기부금·찬조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의 출연 또는 출자를 못함 -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주식의 50/100(대주주인 경우 15/100)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대주주이거나 총주식의 1/3을 초과 소유한 법인(전화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)	종합유선방송법 제 6조 전기통신사업법 제 6조

구 분	제 한 내 용	관 련 법 규
	-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(정보통신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제외)	전기통신사업법 제 6조
국 내 법 인	- 주주1인(동일인 포함)이 총 발행주식의 1/3(전화역무는 10/100)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 - 다음의 자가 법인의 대표자·이사·감사인 법인 · 미성년자, 한정치산자, 금치산자 등 · 기타 형법, 국가보안법, 보안관찰법, 사회보호법에 의해 제약을 받는 자로서 관계법에 규정된 자 · 상기의 자가 의결권의 5/100이상을 가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등	전기통신사업법 제 6조 종합유선방송법 제 5조
기 타	- 관계법률을 위반하고 일정 요건에 위배되는 자 -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취소 또는 부가통신사업의 사업폐지명령을 받고 일정 요건에 위배되는 자 등	전기통신사업법 제 6조
비 고	※ 전기통신사업법 제 6조제 6호의 제외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도 초고속망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. ※ 단, 그외의 결격사유(1/3, 전화역무의 경우 10/100의 지분제한 등)는 그대로 적용됨.	

### 3. 사업대상지역(정보화촉진기본법 제 29조)

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지역

○ 공업단지, 수출자유지역, 공항, 수도권신공항, 항만 및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

○ 대상지역별 분포

구 분	내 용	지역수	관 련 법 규	자료출처
공 업 단 지	- 국가공업단지 :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해 명칭, 위치 및 면적 지정 - 지방공업단지 : 시·도지사에 의해 명칭, 위치 및 면적 지정	158	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2항	전국공업단지현황 (대한상공회의소)
수 출 자 유 지 역	- 통산산업부장관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관계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된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지역	2	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제 2조제 1항	공업입지센터, 1995)
공 항	-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의 확장 또는 신설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구역으로 결정되거나 국토이용관리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구역으로 입지승인을 얻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 구역으로 고시한 구역	16	항공법 제 2조제 7호	공항현황 및 확충계획 (건교부)
수도권 신공항	- 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으로서 항공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용 비행장	1	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 제 2조제 1호	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 (건교부 1995)
항 만	- 지정항만 :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, 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 - 지방항만 : 지정항만이외의 항만으로서 시·도지사가 그 명칭, 위치 및 구역을 지정·공고한 항만	49	항만법 제 2조제 4호	해운항만청 고시 1995-17호 ('95.3.21)
소 계		226개 지역		
기 타	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지역			

- 전송망사업자간 경쟁촉진을 위해 미허가된 종합 유선방송구역(62개)을 포함한 사업구역의 확대 승인 검토
  - 종합유선방송구역 현황

-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전국을 116개로 분할
- 현재 10만가구를 기준으로 54개 지역 허가
- 시·도별 방송구역 및 전송망사업자 현황

시·도	구역 수	허가구역 수	전송망사업자 분포현황	
			한국통신	한국전력
서울	21	21	10	11
부산	8	8	7	1
대구	6	6	4	2
인천	5	5	1	4
광주	2	2	0	2
대전	2	2	1	1
경기	20	2	1	1
강원	5	1	1	0
충북	5	1	1	0
충남	6	1	0	1
전북	6	1	1	0
전남	8	1	1	0
경북	9	1	0	1
경남	11	1	0	1
제주	2	1	1	0
계	116	54	21	33
			54	
비고	(주)데이콤은 전송망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고 있음			

- ▶ 미허가 종합유선방송구역의 초고속망사업자로 하여금 타지역 종합유선방송국의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당해지역에 제공토록하는 방안 강구
- ▶ 종합유선방송국과 전송망사업의 겸영이 허용되는 경우 종합유선방송국 미허가지역의 초고속망사업자에게 종합유선방송국을 허가하는 방안 강구

#### 4. 제공역무

- 전기통신기본법의 전기통신역무, 종합유선방송법의 전송망사업 등
- 단, 실시간 동영상정보 송·수신이상의 정보통신역무제공 조건 부과
  - 실시간으로 동영상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이상이므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초고속

정보통신역무(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 8 조)

- 전기통신사업법 제 4조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전기통신역무만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승인 배제(Negative 방식)

- ▶ 통신·방송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종합유선방송국 허가와 전송망사업자 지정시 디지털방식을 적용토록 추진

#### ○ 의의

- 사업자승인시 검토사항(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24조제2항)
 

“정보통신부장관이 ...승인을 함에 있어서는... 검토하여야 한다. 2.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초고속정보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”

- 사업승인의 조건(동시행령 제24조제3항)  
“정보통신부장관은 ...승인하는 경우에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조기구축 및 이용확산을 위하여... 초고속정보통신역무의 제공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”

- 1단계 심사·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초고속정보통신망 기술적 요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절대적 심사기준으로 하고 이에 합격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계획의 우수성을 심사함.

○ 심사기준

심사내용			배점
번호	심사항목	심사기준	
1	초고속정보통신망 기술적 요건과의 적합성	· 초고속정보통신망 기술적 요건과의 적합성 · 제공역무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연계성	합격·불합격 여부를 판정
2	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 운영계획의 타당성	· 망구성계획의 우수성 · 운용보전계획의 우수성 · 설비규모의 적정성	30
3	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한 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	· 시장 분석 및 예측의 적정성 · 역무제공 및 판매계획의 타당성 · 기술개발계획과의 연계성	20
4	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	· 기술개발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· 기술협력계획의 우수성 ·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· 표준화계획의 우수성	30
5	기술 및 재정적 능력	· 전문인력 보유실적 및 확보계획 ·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 능력 · 주요 주주의 재정적 능력 · 구성주주의 적정성	20

5. 승인절차

가. 승인신청방법

- 수시 접수(사전 공고제 없음)
- 동일사업자의 복수지역 참여 허용

나. 승인시 검토사항(심사기준,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24조)

-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
-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활용한 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
- 관련 기술개발 실적 및 계획
- 기술 및 재정적 능력
- 정보통신부장관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술적 요건과의 적합성
-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

다. 승인신청시 제출하게 되는 서류(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제7조)

- 사업계획서
- 법인(설립예정인 법인 포함)의 대표자·이사 및 감사의 호적등본
-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
-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등의 주식등 소유에 관한 서류
- 법인의 주주등의 동일인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호적등본
- 기술 및 재정적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

라. 승인의 결정

- 접수후 3개월내에 승인여부 결정
- 동일지역 중복신청의 경우 심사·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승인
  - 최초 신청자접수를 기점으로 일정기간내에 중복신청하는 경우

※ 심사방법 및 기준

- 기본원칙

○ 평가방법

- 초고속정보통신망 기술적 요건과의 적합성 심사서 합격한 법인에 한하여 2 내지 5항의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
- 100점 만점중 총점 60점이상을 받은 사업자에 한하여 승인하며 각 항목당 과락은 없음
- 심사·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학계, 연구소등의 전문가와 법조인 등으로 심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

**6.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**

- 초고속망사업자로서 승인 받고자하는 자는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수준이상의 고속·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함
- 또한, 초고속망사업자는 초고속가입자망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사업 개시 1년이내에 가입대상자 10%이상에게, 사업구역에 균형적으로,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함
-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개념
  - 전기통신기본법상의 기술기준과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상의 기술적 요건에 적합하고,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송·수신할 수 있는 고속·대용량의 정보통신망(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)
  -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기술적 요건(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26조)
    - 현재의 기술현황과 필요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최소한의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능력으로서 초고속망사업에의 진입요건으로 활용됨
    - 내용

- 제공 대역폭 : 가입자당 양방향 각각 2 Mbps 이상(또는 이에 상당하는 아날로그 대역폭)
- 연결제어능력
  - 가입자간의 자유로운 접속을 위해 요구형 교환연결이 가능하여야 함
  - 점대점연결뿐만아니라 점대다중점연결이 가능하여야 함
- 가입자와 망간 접속규격은 표준화된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단말기를 접속할 수 있어야 함

**7. 상호접속 및 자기통신설비 활용**

- 초고속망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3개월안에 정보통신설비의 상호접속협정을 체결하여야 함(정보화촉진법 제31조)
  - 상기의 협정이 3개월내에 체결되지 아니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이익을 고려 일정기간을 정하여 협정을 체결하도록 명할 수 있음
- 초고속망사업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에 의한 자기통신설비자 및 종합유선방송 전송망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당해 설비 및 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음(정보화촉진법 제30조, 동법시행령 제25조)

**8. 기타 : 추가승인 및 사업개시 의무**

- 한 사업자가 승인을 얻은 경우 사업개시후 2~3년간 동일지역에 추가승인을 하지 않으므로써 사업의 안정성 확보
- 초고속망사업자는 사업계획서상의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승인 취소(단, 특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) ◆